

# 학사내규 개정(안) 심의서

## 1. 규정 개정 취지

- 외국대학 복수학위생에 대한 본교 학점인정 근거 마련
- 방학 중 실시하는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근거 마련
- 재난·재해 및 감염병 등 예측 불가한 사유 발생 시 출석인정 기준 근거 마련
- 수료생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한 졸업시험 또는 논문·졸업영어시험·컴퓨터시험 폐지
- 「학사학위취득 유예」 운영을 위한 세부 지침 마련

## 2. 개정 주요 내용(주요 골자)

- 외국대학 복수학위생에 대한 본교 학점인정 근거 마련
  - 외국대학 복수학위생에 대한 교과목 이수 및 학점인정 규정 따로 정함
- 방학 중 실시하는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근거 마련
  -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'학기 외 기관실습 운영 관련 조치사항' 에 의거함
- 재난·재해 및 감염병 등 예측 불가한 사유 발생 시 전체교수회의와 교무위원회를 통해 출석인정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내용 신설
- 수료생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한 졸업시험 또는 논문·졸업영어시험·컴퓨터시험 폐지
- 「학사학위취득 유예」 운영을 위한 세부 지침 마련
  - 고등교육법 제23조의 5(학사학위취득의 유예)에 대한 근거 마련

## 3. 신구대조표 (붙임 참조)

현행	개정(안)	개정사유
<p align="center"><b>제4장 복수전공·자율설계융합전공</b></p> <p><b>제18조(교과목 이수 및 학점) ① 삭제</b>          ②복수전공 및 자율설계융합전공 승인 이전에 일반선택과목으로 이수한 복수전공 및 자율설계융합전공 교과목은 승인 이후 이수구분변경신청서를 교학지원처에 제출할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. &lt;개정 2020.02.17.&gt;          ③자율설계융합전공 신청학생이 이수한 졸업인증제과목과 교양과목도 자율설계융합전공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. &lt;개정 2020.02.17.&gt;</p>	<p align="center"><b>제4장 복수전공·자율설계융합전공·외국대학 복수학위</b></p> <p><b>제18조(교과목 이수 및 학점) ① 좌동</b>          ②좌동           ③좌동   <u>④단, 외국대학 복수학위생의 경우 관련 규정에서 따로 정한다. &lt;개정 2021.00.00.&gt;</u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외국대학과 우리대학 간의 학사운영 불일치에 따른 복수학위생 본교 학점인정 근거 마련</li> </ul>
<p><b>제45조(수업)①</b>수업은 주간수업, 야간수업, 계절수업, 방송·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. &lt;신설 2020.06.15., 개정 2021.04.28.&gt;          ②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간수업, 야간수업 및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. &lt;신설 2021.04.28.&gt;</p>	<p><b>제45조(수업) ①좌동</b>           ②좌동   <u>③사회복지현장실습은 교과목 개설학기 직전 방학 중 실시한 경우에도 현장실습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. &lt;신설 2021.00.00.&gt;</u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방학 중 실시하는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근거 마련</li> </ul>
<p><b>제52조(출석 및 결석) ①</b>강의 담당교수는 매 교시마다 수강 학생의 출석을 점검하고, 출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. &lt;신설 2020.02.17.&gt;          ②교학지원처는 3주 누적 무단 결석자에 대하여 해당 학생의 지도교수에게 통보하고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의 출석을 독려하여야 한다.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과목 수업 일수의 3/4의 이상 출석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과목의 성</p>	<p><b>제52조(출석 및 결석) ①좌동</b>           ②좌동</p>	

<p>적은 F로 기록되며 과목낙제가 된다. &lt;신설 2020.02.17.&gt;</p> <p>③7학기 이상(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기 이상) 재학생이 조기취업으로 인하여 2항의 결석 허용한계 초과 시, 학생은 증빙서류를 교학지원처에 제출하고, 취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과목 담당교수는 2항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다. &lt;신설 2020.02.17.&gt;&lt;개정 2021.02.26.&gt;</p> <p>④3회의 지각은 1회의 결석으로 환산한다. &lt;신설 2020.02.17.&gt;</p>	<p>③좌동</p> <p>④좌동</p> <p><u>⑤재난·재해 및 감염병 등 예측 불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체교수회의와 교무위원회를 통해 출석 인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. 단, 교과목 특성에 따라 담당교수 재량으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. &lt;신설 2021.00.00.&gt;</u></p>	<p>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탄력적 운영 절차 마련</p>
<p><b>제70조(졸업의 기준)</b> ①졸업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. &lt;개정 2020.02.17.&gt;&lt;개정2021.02.26.&gt;</p> <p>1. 등록학기: 8학기 이상(조기졸업자는 6학기 이상)</p> <p>2. 취득학점</p> <p>가. 총 취득학점: 130학점</p> <p>나. 전공과정</p> <p>- 단일전공 60학점 이상</p> <p>- 복수전공 각각 42학점 이상</p> <p>- 자율설계융합전공: 자율설계융합전공 운영지침에 따른다. &lt;개정 2020.06.15.&gt;</p> <p>3. 총 성적 평점평균: 2.00 이상(조기졸업자는 4.00 이상). 다만, 교양과목의 취득학점이 20학점을 초과하였을 경우 교양선택과목 중에서 성적이 낮은 교과목 순으로 제외하고 성적평점평균 산출</p> <p>4. 교육과정 및 기타</p> <p>가. 2020학년도 이후 입학생 적용</p>	<p><b>제70조(졸업의 기준)</b> ①좌동</p> <p>4. 교육과정 및 기타</p> <p>가. 좌동</p>	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교양과정 취득학점: 교양필수과목 33학점</li> <li>- 영어인증제 합격</li> <li>- 160골드 취득(단, 편입생과 복수학위생은 80골드 취득)</li> </ul> <p>나. 2018학년도, 2019학년도 입학생 적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교양과정 취득학점: 교양필수과목과 교양선택과목을 포함하여 23학점 이상 25학점 이내로 하며 전공기초를 제외한 3개 이상 영역에서 각 1과목 이상 이수하되, 교양선택의 영역별 이수에서 2과목 이상은 외국어 강의 교과목 포함</li> <li>- 졸업시험 또는 졸업논문 합격</li> <li>- 졸업영어시험 및 컴퓨터 시험 합격</li> <li>- 졸업인증제 영역별 이수</li> </ul> <p>다.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 적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에 따름</li> </ul> <p>② 재학 중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에 의한다. 단, 편입생의 경우 해당 학년의 입학 학년도 기준에 따른다. &lt;신설 2020.02.17.&gt;</p>	<p>나. 2018학년도, 2019학년도 입학생 적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교양과정 취득학점: 교양필수과목과 교양선택과목을 포함하여 23학점 이상 25학점 이내로 하며 전공기초를 제외한 3개 이상 영역에서 각 1과목 이상 이수하되, 교양선택의 영역별 이수에서 2과목 이상은 외국어 강의 교과목 포함</li> <li>- <u>삭제 &lt;개정 2021.00.00.&gt;</u></li> <li>- <u>삭제 &lt;개정 2021.00.00.&gt;</u></li> <li>- 졸업인증제 영역별 이수</li> </ul> <p>다. 좌동</p> <p>② 좌동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졸업기준 변경에 따라 졸업시험(논문), 졸업영어시험 및 컴퓨터시험 합격 요건 폐지</li> </ul>
<p><b>제72조(졸업사정·학사학위 취득 유예) ①</b> 졸업예정자에 대한 졸업사정은 교학지원처가 작성한 졸업사정자료를 근거로 하여 전체 전공별 각 1인의 전임교원으로 구성된 졸업사정 교수회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.</p> <p>②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은 졸업유예원을 졸업사정 이전에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 총장이 승인한다. &lt;개정 2020.06.15.&gt;</p> <p>③ 학사학위 취득 유예가 확정된 자는 유예기간 중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, 등록금은 학칙 제24조 5항을 따른다. &lt;신설 2020.02.17.&gt;</p>	<p><b>제72조(졸업사정·학사학위 취득 유예) ①</b> 좌동</p> <p>② 좌동</p> <p>③ 좌동</p> <p><u>④ 학사학위 취득 유예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 &lt;신설 2021.00.00.&gt;</u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고등교육법 제23조 5(학사학위취득의 유예)에 대한 근거 마련</li> </ul>

<p><b>제73조(졸업시험 실시)</b> ①졸업시험을 실시하는 학과는 소속 학과(전공) 전임교원이 시험문제의 출제, 채점 및 평가를 담당한다. 다만, 학제개편으로 인하여 소속 학과(전공) 전임교원이 부재한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 <p>②졸업논문 심사의 평가는 합격과 불합격으로 한다.</p> <p>③각 학부장은 학과(전공)별 졸업시험 또는 졸업논문의 결과를 졸업예정학기의 종강일까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④자율설계융합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에게는 졸업시험 및 졸업논문을 부과하지 않는다.</p>	<p><b>제73조(졸업시험 실시) ① 삭제 &lt;개정 2021.00.00.&gt;</b></p> <p><b>② 삭제 &lt;개정 2021.00.00.&gt;</b></p> <p><b>③ 삭제 &lt;개정 2021.00.00.&gt;</b></p> <p><b>④ 삭제 &lt;개정 2021.00.00.&gt;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졸업기준 변경에 따라 졸업시험 관련 규정 삭제</li> </ul>
<p><b>제74조(졸업영어시험·컴퓨터 시험)</b> 졸업영어시험 및 컴퓨터 시험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</p>	<p><b>제74조(졸업영어시험·컴퓨터 시험) 삭제&lt;개정 2021.00.00.&gt;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졸업기준 변경에 따라 졸업영어시험 및 컴퓨터시험 운영지침 폐지</li> </ul>
<p><b>제75조(졸업시험, 졸업영어시험, 컴퓨터시험 불합격자의 처리)</b></p> <p>①졸업시험, 졸업영어시험, 컴퓨터시험 불합격자는 학사학위를 수여하지 않으나 수료증은 교부할 수 있다.</p> <p>②졸업시험, 졸업영어시험, 컴퓨터시험 불합격자는 수료 이후 학기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.</p> <p>③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육개발원 취·창업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졸업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 단, 해외취업에 따른 기준 및 증빙서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</p>	<p><b>제75조(졸업시험, 졸업영어시험, 컴퓨터시험 불합격자의 처리)</b></p> <p><b>① 삭제 &lt;개정 2021.00.00.&gt;</b></p> <p><b>② 삭제 &lt;개정 2021.00.00.&gt;</b></p> <p><b>③ 삭제 &lt;개정 2021.00.00.&gt;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졸업기준 변경에 따라 졸업시험, 졸업영어시험, 컴퓨터시험 관련 규정 삭제</li> </ul>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부 칙</b></p> <p>1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21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2. (경과조치) 제45조(수업) 제3항, 제52조(출석 및 결석) 제5항, 제72조(졸업사정·학사학위 취득 유예) 제4항의 경우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개정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.</p> <p>3. (경과조치) 제70조(졸업의 기준) 제1항 4의 나, 제73조(졸업시험 실시), 제74조(졸업영어시험·컴퓨터 시험), 제75조(졸업시험, 졸업영어시험, 컴퓨터시험 불합격자의 처리)</p>	

에 따라, 졸업시험, 졸업영어시험, 컴퓨터시험 불합격자는 2021학년도 전기 졸업사정에 적용한다.
---